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contents

용어 및 약칭등 설명 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주요 변화 내용 5

1. 개요 8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1) 구성 9

2) 운영 10

3. 입원기간 연장 심사지침 12

1) 심사과정 12

2) 심사내용 18

3) 심사방법 19

4.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지침 20

1) 심사과정 20

2) 심사내용 26

3) 심사방법 27

5. 외래치료명령 심사지침 29

1) 심사과정 29

2) 심사내용 33

3) 심사방법 33

6.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34

1)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34

2)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37

3) 외래치료명령 38

4) 재심사 39

7. 입원기간 연장심사 관련 질의응답 (Q&A) 40

별첨 입원기간 연장심사 관련 서식 42

용어 및 약칭등 설명

용어 및 약칭등	설 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법 제 53조 참고)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1.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2.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3. 외래치료명령 심사 등)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
입원연장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참고서식 제9호서식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통해 입원기간연장 청구를 하였을 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이나 조치 중 하나로서 입원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계속입원	환자가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통해 퇴원등을 신청하였을 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이나 조치 중 하나로서 계속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서류심사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만을 가지고 입원연장, 계속입원, 외래치료 등의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유형
대면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청구인(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등) 또는 심사 대상자 및 그 보호자 등과 대면하여 입원연장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유형
현장조사	관계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원(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등)이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을 출입하여 심사 대상자등을 조사
별지서식과 참고서식	별지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이며, 참고서식은 법정 서식은 아니나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서식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주요 변화 내용

[신·구 대조표]

구분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명칭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 계속입원심사	1. 정신건강심의위원회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3.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구성		[제28조] 1.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은 ①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1인 이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54조] 1. 5인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1명 이상 ②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회복한 사람, 그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포함
위원임기		[제28조]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연임할 수 있음)	[제53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
운영		[제28조]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제54조]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단 심사가 없는 달에는 생략)
기피·회피			[제58조] 1. 심사를 청구한 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함 2.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함
입원연장등 심사	심사주기	[제24조] 보호입원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입원기간 연장심사	[제43조] 보호입원 최초 입원 후 3개월-3개월-6개월 주기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심사
		[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계속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원	[제62조] 행정입원 최초 입원 후 3개월-3개월-6개월-6개월 주기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심사

구분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연장등 심사	심사요건	[제24조] 보호입원 1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필요	[제43조] 보호입원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제44조] 행정입원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함)
	보호의무자	[제21조] 1. 부양의무자-후견인 순	[제39조] 1. 후견인-부양의무자 순 2.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	의견참조	[제31조] 1. 심사 시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제57조] 1. 심사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심사자료		[제57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 제1항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제33조] 1. 퇴원 또는 임시퇴원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제59조] 1.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5. 자의입원, 동의입원 전환 6. 외래치료 명령 7. 입원등 기간연장 (입원등 기간연장심사의 경우) 8. 계속입원 결정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경우)

구분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심사결과 통지	[제33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함. 2.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제33조2항, 후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함.	[제59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명령 또는 결정을 함. 2.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함.
임시퇴원	[제37조] 보호입원의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임시퇴원 가능.	[제63조]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임시퇴원 시킴.
외래치료	[제37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불응할 때에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제64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함.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I 개요

본 지침은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외래치료 명령 등의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본 지침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환자의 개인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 및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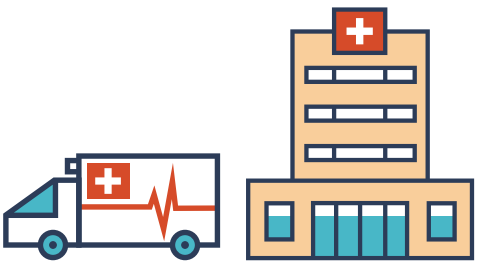

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53조, 제54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법 시행령(이하 “영”) 제28조)

○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영 제2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영 제26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자니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4항,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2. 운영

○ 월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4조제3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28조제3항)

○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법 제58조제1항)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법 제58조제3항)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할 때에는 당초에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법 제61조제3항)

○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 제58조제2항)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4항)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27조제2항)

○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대면심사 및 현장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시행
- 사전 청구자료 검토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을 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보건소의 장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및 결과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및 결과 기록물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

-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및 결과 기록물**
  -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동의한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보호입원등의 경우에 한한다)
  - 최초 입원등의 연월일
  - 입원등연장이 필요하다는 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등

○ 기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영 제28조제5항)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 예산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복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입원 기간 연장 심사[1] 지침

1. 심사과정

❶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❷ 회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❸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❹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
❺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 및 임시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자의 및 동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 이송 명령, 입원등 기간 연장
❻ 재심사 청구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
❼ 재심사 회부	시장 • 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
❽ 재심사	광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의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영 제 18조)

○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장심사를 청구하면서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결과서 (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 보호입원의 경우와 달리 행정입원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연장 시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이거나 1인 이상은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43p 참조)

○ 국립정신병원장은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혹은 불일치된 진단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 해당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필요 소견인 경우에만 입원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로 보관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서(1,2차),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만)와 함께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❶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❷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❸ 3개월 이내 재심사

-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❹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4조제4항의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참고할 수 있다.
> ※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

❺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정신의료기관측에서 받은 날부터 당연히 입원은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측에서는 그 입원유형전환명령에 따라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❻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 별도의 외래치료명령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❼ 입원기간연장 결정

4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 기 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59조제4항)

○ 입원기간 연장 시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에 의하면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의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음.

5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법 제43조제7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 p34)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재심사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한다. (영 제30조제1항)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2항, 영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7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1항)

8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최초 입원 후 법이 정한 입원연장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입원연장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연장 청구,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환자의 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입원 기간 연장 심사 확인요소

3. 심사방법

○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대면 심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대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영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다.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57조제3항)**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Ⅳ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지침

1. 심사과정

❶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권 고지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 고지
❷ 심사청구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가능
❸ 회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❹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❺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
❻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 및 임시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자의 및 동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 이송 명령, 계속입원 등 결정
❼ 재심사 청구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
❽ 재심사 회부	시장 • 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
❾ 재심사	광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

①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권 고지 (정신의료기관 등)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그 방법은 서면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구두로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

② 심사청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등)

○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필요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적정성 여부 포함)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1항)

○ 퇴원등(퇴원 또는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1부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영 제29조, 시행규칙 제43조)

③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4 심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❶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❷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❸ 3개월 이내 재심사

-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❹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 ※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

❺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의 통지를 정신의료기관측에서 받은 날부터 당연히 입원은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측에서는 그 입원유형전환명령에 따라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❻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 별도의 외래치료명령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❼ 계속입원등 결정

- 입원환자의 퇴원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그 퇴원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속입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계속입원 결정을 한 경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입원기간에 따른 만료일까지만 계속입원 될 수 있다.

5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조치사항 및 그 조치의 이유)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7 재심사 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한다. (영 제30조)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2항, 영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8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1항)

9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입원 및 계속입원연장 당시 등의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강제입원과 입원연장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요소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법 제57조제2항)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영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심사를 할 때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57조제3항)

- 진료기록부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입원적합성신고에 관한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 및 입원연장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광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memo

V 외래치료명령 심사지침

1. 심사과정

❶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 청구 가능
❷ 회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❸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❹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장 및 외래치료 명령을 수행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 통지
❺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지자체장이 통보한 내용 이행
❻ 조치사항 모니터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관할 공무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은 해당 환자가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❼ 후속조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치료중단 시 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받도록 명령 (명령받은 날부터 14일이내)

1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보호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명령 청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외래치료명령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명령을 한다. (법 제64조제2항)

4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외래치료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외래치료명령을 수행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참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기관, 치료방법, 내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참고)

5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6 조치사항 모니터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 치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지 통원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참고)

7 후속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4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제4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5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제6항)

-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보호입원)에 따라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 제44조제7항(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7항)

2. 심사내용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작성한 외래치료명령 청구서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를 토대로 외래치료 명령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외래치료명령의 적정성 여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
- 치료순응도, 재발에 대한 과거력,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행동의 경험 및 향후 위험성 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Ⅵ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1. 입원 등 기간연장 심사

1) 심사청구서식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결과서',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등이며, 필요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서식 설명

❶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는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서식]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첨부서류

-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에 한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 환자의견진술서 1부(선택사항)

❷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 보호입원에서 입원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호의무자 2인에게 작성하도록 한다.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이었던 경우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기존 보호의무자가 1명의 동의로 연장가능하다.
-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어서 1명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명을 추가하여 연장가능(추가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구비 필요)하다.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개정 법에서 보호의무자의 요건, 우선순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24~25p 참조

❸ 진단결과서

진단결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 ※ 진단결과서 작성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122~125p 참조

❹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라는 통지를, 그 외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라는 통지를 내린다.
- 통지방법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참고서식 제8호서식]').

> ※ 행정입원인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❺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을 참고하여 환자의 입원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심사결과통지서식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서식으로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가 있다.

(1) 서식 설명

❶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❷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결과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 ※ 참고서식 제7호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호서식(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1) 심사청구서식

❶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1호 서식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에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를 적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심사결과통지서식

❶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외래치료명령

1) 청구서식

❶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외래치료명령 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첨부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 환자가 외래치료명령을 받기로 결정한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재심사

1) 심사청구서식

❶ 재심사 청구서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외래치료명령에 불복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

- 심사기간 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참조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Ⅶ 입원기간 연장심사 관련 질의응답 (Q&A)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Q1 개정법에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다시 위촉하여야 하나요?

A1

- 개정법 부칙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종전에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개정법 제53조, 제54조에 의한 위원회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위촉 시 위원회 구성 요건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위원회 연임 관련

Q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가능한가요?

A2

- 개정법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중 하나(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연장과 계속입원연장의 차이

Q3 입원기간연장과 계속입원연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 입원기간 연장은 「법정서식 별지9호 입원등 연장심사청구서」를 통해 기간연장 청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속입원 연장은 환자가 「법정서식 별지21호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통해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계속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구 관련

Q4 입원에 동의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4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는 모두 퇴원 및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입니다.

Q5 입원연장 심사 청구 시 제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유효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5

-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권고서 등)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통지 관련

Q6 심사결과 통지는 어떻게 하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A6

- 지자체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법정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연장심사를 받지 못하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15일 내에 결정한다는 의미는 명령이나 결정의 도달일까지를 15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15일로 한 것입니다. 그 명령이나 결정만 15일(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25일) 이내로 발령하면 됩니다.
- 15일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접수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별첨

입원기간 연장심사 관련 서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진단 결과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환자가 서술하는 현재 상태		

기존 진단명(ICD-10)	
최종 진단명(ICD-10)	
증상	[ ] 환각 [ ] 망상 [ ] 흥분, 충동성 [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 조증상태 [ ] 의식장애, 혼미 [ ] 행동조절장애 [ ] 그 밖의 증상 (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 [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자신의 건강 · 안전 위험([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 타인의 건강 · 안전 위험([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뒤쪽)

그 밖의 의견	
최종 소견	[ ] 입원 · 입소 필요 [ ] 입원 · 입소 불필요

년 월 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제4항 · 제6항제1호, 제44조제3항 · 제6항,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210mm x 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 ] 입원 · 입소자 [ ] 보호의무자		
입원 ·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요양시설	시설 명칭		
	주소		

■ 청구내용 (복수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입원(입소)자 성명
[ ] 보호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제출	→	(청구서 송부)	→	접 수	→	회부	→	심사	→	결 정	→	통 보
입원 · 입소자 또는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청구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접수일 년 월 일	청구번호	구분	[ ] 보호입원(입소) · 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 ] 행정입원(입소) · 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 ] 퇴원(퇴소)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통지 대상	[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입원(입소)유형: [ ] 보호입원(입소) [ ] 행정입원(입소)		
	[ ] 보호의무자 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보호의무자 I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정신건강증진시설	명칭		전화번호
		주소		

■ 조치사항

■ 조치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재심사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청구번호: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의 외래치료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입원등 기관·시설	명칭		
	주소		

■ 재심사 청구내용

■ 재심사 청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금회 입원일 년 월 일	입원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유형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입원 전 자·타해 행동 여부	[ ] 있음 [ ] 없음	
	외래치료기관 추천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명령 청구기간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1년	
보 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위 환자에 대해 아래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 보
정신의료 기관의 장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정신의료기관의 장, 환자, 보호의무자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7호서식]

(입원등[ ] 및 입원등 기간 연장[ ])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입원등 연장 기간 년 월 일까지
환자 입원유형	[ ] 보호입원등 [ ] 행정입원등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 사유

1. 환자는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연장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2. 보호입원등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에 따른 퇴원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에게 입원등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입원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와 보호의무자께 정신의료기관등의 치료와 요양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환자 · 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4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법이 정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등이 가능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4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 또는 법이 정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 청구 불가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4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을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등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서식]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입원 유형	[ ] 보호입원등 연장심사청구 [ ] 행정입원등 연장심사청구
	주소			연락처	
	진단(ICD-10)			직업	
	금회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입원등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작성일 년 월 일	
	최초 발병시기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입원등 횟수(다른 기관 입원한 횟수 포함) 회 ※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등 연장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등에 한함)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3. 국립정신병원장등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 보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청구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보 호 의무자(Ⅰ)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 호 의무자(Ⅱ)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본인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성명	입원등 연장에 대한 의견 1.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등 연장 필요성, 향후 퇴원등 계획 및 퇴원등 후 돌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보호의무자로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의무자 Ⅰ	
보호의무자 Ⅱ	

210mm x 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입원병원명칭
	주소		

1.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연장 심사청구서에 첨부되어 입원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2. 환자 본인이 입원연장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의견서

환자 본인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앞면에 있는 사항 외에도 입원 경위, 입원연장 또는 퇴원이 필요한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구두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서명 후 제출합니다.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간호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 의견진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환자 의견진술서 작성	→	송부	→	접수	→	입원연장심사	→	결정	→	통 보
환자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환자 및 정신 의료기관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

환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서식]

외래치료명령심사 결과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접수일		청구번호	처리기간	즉시
년 월 일				
통지 대상	[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입원(입소)유형: [ ] 보호입원(입소) [ ] 행정입원(입소)		
	[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입원 정신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 ] 외래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 조치사항

▪ 외래치료기관

[ ] 현재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 ( )

▪ 외래치료명령 기간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1년

■ 조치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4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의료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memo

memo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발 행 일	2018년 6월
발 행 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주 소	(우 04933)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대표전화	(02) 2204-0114
팩 스	(02) 2204-0383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I S B N	979-11-86322-56-7
인 쇄 처	글월기획 Tel. (02) 2268-8684
비 매 품	

공공누리 OPEN KOGL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